

장학생 선발 준칙

제정 1990. 03. 01.

제39차 개정 2019. 08.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학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의 10호를 제외한 교내장학금은 이 준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5.4)

제2장 장학금

제3조(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학과별 또는 학부(군)별 현원에 비례하여 균등 배분한다.

1. 입학성적 최우수 장학금-입학 당시 입학금, 등록금이 면제되며, 재학 중 학칙시행세칙 제11조(수강신청 한도학점)에 의거 매학기 평균 85점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또한 매월 일정액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5.14. 2014.11.21)
2.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입학당시 입학금, 등록금이 면제되며, 재학 중 매학기 85점 이상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입학성적 학과별 또는 학부(군)별 우수 장학금 - 입학당시 한학기만 해당되며, 장학금액은 순위별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 기타 신입학 입학전형에 따른 신입생 관련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종별과 장학금액은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호 신설 2009.7.27.) (개정 2016.09.19)

제4조(성적우수 장학금) 학칙시행세칙 제11조(수강신청 한도학점)에 의거 학과, 학부(군) 또는 전공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과락 과목 없이 평균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과, 학부(군) 또는 전공별 재학인원(학기 인정자)이 5명 이하일 경우 선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명이상일 경우 7%에 해당하는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액은 순위별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폐과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선발인원과 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2.7.10, 2004.6.14., 2007.10.29, 2012.5.4. 2014.11.21. 2015.03.02)

제5조(학업장려 장학금) 삭제

제6조(봉사 장학금) ① 봉사장학금 I 은 총학생회 간부, 각 대학 학생회 간부, 각 학과 학회장 및 부학회장, 과대표, 동아리연합회 간부 학생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2.7.10, 2004.6.14., 2005.4.19, 2006.12.11, 2007.3.12, 2008.6.16, 2009.7.27, 2017.5.16, 2019.04.26)

- ② 봉사장학금 I 은 타 장학금과 중복되는 경우 장학금액은 등록금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항신설 2006.12.11) (개정 2007.3.12, 2007.10.29, 2012.5.4)

- ③ 봉사장학금 II는 우리대학 사회봉사단에 참여하여 소정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항 신설 2007.3.12)

제7조(교직원자녀장학금) 본 대학 및 상지학원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직계자녀로서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5.03.02)

1. 신입생 - 입학금, 등록금 면제
2. 재학생 - 등록금 면제

제8조(유공자자녀장학금)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었거나 공로가 있는 분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장학금 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체육특기자장학금) ① 입학당시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과 재학 중 체육특기자장학생으로 선발 된 학생에게 지급하며, 재학생 체육특기자장학생 선발과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항 신설 2007.10.29.)(개정 2015.09.07.)

1. (호 개정 2007.10.29) (삭제 2012.5.4)

2. (호 개정 2007.10.29) (삭제 2012.5.4)

② 체육특기자와 동일종목 동일대회에 출전하여 성적을 거둔 비특기자 학생에게 체육특기자의 장학 인센티브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항 신설 2007.10.29)

제10조(체육 유공 장학금) 재학중인 사람이 학교를 대표하여 출전허가를 받아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고취시킨 사람에게 지급하되, 장학금액은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다만, 체육 특기자는 제외)

제11조 (상지희망나눔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과 연계하여 결정되는 소득분위에 따라 가계고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 및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4)

1. 상지희망나눔장학금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로서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국가장학신청 성적기준, 재학생, 복학생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2. 상지희망나눔장학금II : 가계가 곤란한자 중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국가장학신청 성적기준, 재학생, 복학생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3. 상지희망나눔장학금III : 가계가 곤란한자 중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79점인 학생

제12조(보훈 장학금) 보훈법에 의한 원호대상자 자녀(본인)로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 70점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다만, 본인은 성적에 규제 받지 아니한다)

1. 신입생: 입학금, 등록금 면제

2. 재학생: 등록금 면제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국가유공자(자녀)증명서 1통(신규자, 복학자만 해당)

제13조(특별 장학금) 총장이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11., 2018.04.18)

제14조 삭제 (2012.5.4)

제15조(해외연수 장학금)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해외연수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한다. (개정 2006.12.11)

제16조(외국인·재외국민 장학금) ① 외국인 장학A는 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로 장학금은 자매교협약규정에 의해 정한다.

② 외국인장학B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신(편)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11.27)

③ 외국인장학C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업무협력을 체결한 대학의 총장 추천을 받아 편입학 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항 신설

2012.5.4)

- ④ 재외국민장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으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80점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항 번호 변경 2012.5.4)
 (조 개정 2008.6.16)

제17조(화목장학금) 본교에 직계가족(부부인 경우를 포함) 2인 이상이 재학 시 경제사정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12.11)

제18조(공무원장학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장애인장학금) 본인이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경제사정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04.6.14.) (개정 2006.12.11., 2019.08.29)

제20조(상지장학금) 상지학원 소속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가 우리대학교에 신(편)입학 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6.2.27) (개정 2012.5.4., 2013.11.27)

제21조(취업장려장학금) ① 상지직장탐색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소정의 실습을 이수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11)

- ②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상지직장탐색프로그램에 일정비율 포함시킬 수 있다. (항 신설 2006.12.11) (신설 2006.2.27)

제22조(고시장학금)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인자로서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 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에 최종합격자 재학생 또는 장학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5.4. 2014.7.16)

1. 삭제 (2012.5.4)
 2. 삭제 (2012.5.4)
- (조 신설 2008.6.16)

제23조(학업봉사장학금) 학과(부)장 및 행정부서장이 학교 활동에 봉사하는 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7.27, 2012.5.4, 2017.5.16)
 (조 신설 2008.6.16)

제24조(군위탁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 군위탁생으로 선발되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70점이상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08.6.16)

제25조(부사관장학금)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신분으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이상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08.6.16)

제26조(ROTC장학금) ROTC장학은 ROTC 간부, 입영훈련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09.7.27)

제27조(활동장려장학금) 활동장려장학금은 신문사 간부, 영자신문사간부, 방송국 간부, 교지편집위원회 간부, 생활관 간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간부, 고시원간부 및 학문, 문화, 예술체육부문에서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단체로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범위는 별도 심의

하여 결정한다.)

(조 신설 2009.7.27.) (개정 2016.09.19, 2017.05.16, 2019.04.26)

제28조(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삭제(2019.05.20)

제29조 삭제 (2012.5.4)

제30조(학비보조장학금) 삭제(2019.05.20)

제31조(상공회의소회원가입업체직원장학금) 원주상공회의소 회원업체로 가입한 업체 직원으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12.5.4)

제32조(교직원 본인 장학금) 본 대학 및 상지학원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12.5.4.) (개정 2015.03.02)

제33조(상지포인트장학금) 학업성취, 사회봉사, 학교기여, 취업과 연계하여 각 영역별 인정내역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12.5.4)

제34조(편입교류협약장학금) 우리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편입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12.5.4)

제35조(교육역량장학금) 우수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역량 프로그램 운영에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12.5.4)

제36조(학사편입장학금) 우리대학에 학사 편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15.03.02)

제37조(강의지원도우미장학금) 삭제(2019.05.20)

제38조(연구지원도우미장학금) 삭제(2019.05.20)

제39조(학업지원장학금) 삭제(2019.05.20)

제40조(교비국가2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장학2유형 사업참여에 따라 국가 또는 한국 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가장학2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2유형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타 세부사항 및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당해연도 장학예산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09.19.)

제41조(동문자녀장학금) 상지대학교 졸업생의 자녀가 우리대학교에 신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신설 2017.05.16.)

제42조(상지119장학금) 재학기간중 가계곤란 또는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8.04.18.) (개정 2019.05.20.)

제43조(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 학생에게 법령에 따라 장학

금을 지급한다.

(조 신설 2018.08.29)

제44조(다문화가정장학금)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는 이민자 본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액 및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8.08.29)

부칙

이) 준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준칙 제3조 제2항의 재학 중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97, 2005.4.19)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제6조 봉사장학금 및 제19조 장애인장학금에 대한 적용시점) 이 준칙 제6조 봉사장학금 및 제19조 장애인장학금 자격요건은 2005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13, 2006.2.27)

이 준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85, 2006.12.11)

이 준칙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25, 2007.3.12)

이 준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29, 2007.5.14)

이 준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33, 2007.10.30)

이 준칙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28, 2008.6.18)

① 이 준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준칙 제14조(생보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이전 신입생까지는 종전의 장학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67, 2009.7.27)

① 이 준칙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봉사장학금, 제23조 학업봉사장학금, 제26조 ROTC장학금, 제27조 활동장려장학금에 대한 적용시점) 이 준칙 제6조 봉사장학금, 제23조 학업봉사장학금, 제26조 ROTC장학금, 제27조 활동장려장학금은 2009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57, 2012.5.4)

1. (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9조(체육특기자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12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이전 신(편)입학생은 종전의 장학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6조(외국인장학금) ③항 외국인장학C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20조(상지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11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이전 신(편)입학생은 종전의 장학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0, 2013.2.7)

-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9조(체육특기자장학금) ②항의 장학기준은 2012학년도 신(편)입생까지만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59, 2013.11.27)

1.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6조(외국인·재외국민 장학금), 제20조(상지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14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이전 신(편)입생까지는 종전의 장학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00, 2014.7.16)

- ① 이 준칙은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2조(고시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 선발자는 종전의 장학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56, 2014.11.21)

- 이 준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5, 2015.03.02)

- 이 준칙은 201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00, 2015.09.07)

- ① 이 준칙은 2015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체육특기자장학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체육특기자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15학년도 2학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 ③(연구지원도우미장학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연구지원도우미장학금)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2, 2016.01.12)

-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준칙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99, 2016.09.19)

- 이 준칙은 2016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13, 2017.05.18)

-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봉사장학금 및 활동장려장학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봉사장학금) 및 제27조(활동장려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 (학업봉사장학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학업봉사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④ (동문자녀장학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동문자녀장학금)의 장학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18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8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준칙은 제43조 새터민장학금, 제44조 다문화가정장학금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준칙 제6조 봉사장학금, 제27조 활동장려장학금 장학대상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19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준칙 제19조 장애인장학금 장학대상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